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8 - 9
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연내 개관예정인 아현건강증진센터(보건지소)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아현건강증진센터(보건지소) 설치 근거 마련(안 제9조)
- 나. 한시기구(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)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관련 조항 삭제(안 제3조의2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)부터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까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제외 법령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8. 1. 4. ~ 1. 10. (제출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제외 법령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제외 법령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9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10조”로, “보건소”를 “보건소 및 보건지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의2(한시기구) ① 삭제</u></p> <p><u>②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교육국에 한시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을 둔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9조(설치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.</u></p>	<p><u>제9조(설치) -----</u></p> <p><u>-----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10조- 보건소 및 보건지소-----.</u>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제2항 제1호에 해당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
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전보아
연락처	02-3153-8216